

김선화 / 5월+6월 / 실전 GS / 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1984	16	13	19	11	59	1	1.96%	51
542033	16	13	17.5	11.5	58	2	3.92%	
542615	17.5	10.5	17.5	11	56.5	3	5.88%	
541738	19	12	15	9	55	4	7.84%	
544656	19	12	14.5	9.5	55	4	7.84%	
544817	16.5	10.5	17.5	10.5	55	4	7.84%	
541787	16.5	10	14.5	10.5	51.5	7	13.73%	
541764	15.5	11.5	17	7	51	8	15.69%	
541733	16.5	11	15.5	7	50	9	17.65%	
544535	15	11	12.5	11	49.5	10	19.61%	
541899	17	8.5	15	8.5	49	11	21.57%	
542706	17	10.5	13	8.5	49	11	21.57%	
542950	17	9.5	14	8.5	49	11	21.57%	
543513	17	12	13	7	49	11	21.57%	
542521	14	11.5	15	8	48.5	15	29.41%	
544055	16.5	8	13.5	10	48	16	31.37%	
543698	17	8.5	12.5	10	48	16	31.37%	
542140	15	11.5	12	9	47.5	18	35.29%	
542951	15.5	9	15	8	47.5	18	35.29%	
542660	15.5	8	14.5	8.5	46.5	20	39.22%	
544721	12.5	7	16.5	10	46	21	41.18%	
542824	16	9	11	8.5	44.5	22	43.14%	
543347	17	9.5	11.5	6.5	44.5	22	43.14%	
544542	17.5	10.5	10	6.5	44.5	22	43.14%	
543675	12	11	13	8	44	25	49.02%	
543817	11	9	15	9	44	25	49.02%	
544517	14.5	8	12	9.5	44	25	49.02%	
542789	15.5	9	14	5	43.5	28	54.90%	
543322	14.5	12.5	8	8.5	43.5	28	54.90%	
544689	12	9	12.5	10	43.5	28	54.90%	
535218	17	9	11.5	5.5	43	31	60.78%	
542812	12	11	13.5	6.5	43	31	60.78%	
541776	15	11	12	4.5	42.5	33	64.71%	
542650	16.5	10	10.5	5.5	42.5	33	64.71%	
543093	11.5	10	12.5	8.5	42.5	33	64.71%	
542690	13	10	11	7.5	41.5	36	70.59%	
544348	12	6	13	10.5	41.5	36	70.59%	
544469	13	9	12.5	7	41.5	36	70.59%	
541184	14.5	10.5	11	5	41	39	76.47%	
535192	12	10	12.5	6	40.5	40	78.43%	
535464	12	10	12	6	40	41	80.39%	
544813	13.5	9.5	9.5	7	39.5	42	82.35%	
543546	9	6.5	17	6.5	39	43	84.31%	
544137	13.5	8	4	11	36.5	44	86.27%	
535647	11	8.5	10	6	35.5	45	88.24%	
535255	9.5	7.5	8.5	8.5	34	46	90.20%	
542787	13.5	6	6.5	4.5	30.5	47	92.16%	
544295	11	5.5	9	5	30.5	47	92.16%	
541740	16	8	6	0	30	49	96.08%	
535325	14.5	10	4.5	0	29	50	98.04%	
541783	9	5	10.5	2	26.5	51	100.00%	

<p style="text-align: center;">김선화/5월/실전GS/5회/1번</p>	<p>채점자</p>
	<p>오규해</p>
<p>1. 전반적인 총평</p> <p>이번 5회 1문은 문제에서 묻는바 대로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너무 깊게 생각해 분량 조절에 실패하거나, 앞 설문에서 논점이 탈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배점이 적고 묻는바가 확실하니 묻는바 대로 목차를 나눠 하나하나 검토해주시면 됩니다.</p> <p>첫 번째 주장은 ‘자신의 행위는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것’으로서 교육부는 이용 허락을 받았을 뿐, 乙의 소설을 그대로 이용했으니 주장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주시면 됩니다.</p> <p>두 번째 주장은 ‘저작권자는 교육부이므로 본인은 乙의 권리를 침해한 바 없다’라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소설을 창작한 자는 乙이고 당연히 乙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했으므로 조문-판례-사안 형식대로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p> <p>설문 1이나 2에서 침해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해주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배점도 적고 주장의 타당성을 물었으므로 주 논점인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을 크게 해주시고 나머지 요건들은 간단하게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강약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도 묻는바가 확실한 문제로, ① 갑 행위의 법적 의미, 즉 행위에 대해 복제, 배포 여부를 검토해주시고, ② 주장한 효력제한 사유를 하나하나 판단해주시면 됩니다.</p>	

많은 분들께서 설문 2는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 했을 때 비영리이용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좁다는 판례 정도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적었다면 최소한 그 판례보다는 길게 사안 포섭 해주세요. 결국 민특상에서도 판례를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판례를 부드럽게 사안 포섭에 적용해 사례를 푼 티를 내주셔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티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법 중 하나가 사안 포섭의 양 조절입니다. 주 논점의 사안 포섭만 큼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3) 설문 3

설문 3은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발행의 의미와 관련하여 서술' 하라 하였고, 따라서 공표, 발행에 대한 조문을 꼭 적어주시며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쇄된 직후 검찰에 압수당하여 출고되지 못하였다' 에서 복제는 되었지만 배포는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발행(제2조 제24호)에서의 복제배포에 대한 논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 사이에 있는 '가운뎃점' 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타겟팅한 것으로, 사안에서 "① 복제행위이고 ② 출고되지 못하였으므로 배포행위 아니고 ③ 배포되지 아니하여 발행이 아니고 ④ 발행이 아니므로 공표가 아니다" 는 흐름으로 포섭해주시면 됩니다.

3. 소결

점점 많은 분들이 논점 이탈도 적어지고, 묻는바 대로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작권 실전GS도 한 주 남았는데 마지막 주차도 파이팅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5회/2번	채점자
	조은석

< 채점기준 >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1		법 제2조 제1호(저작물) 언급	1	6
		법 제2조 제17호(편집물) 언급	1	
		법 제2조 제18호(편집저작물) 언급	1	
		법 제6조 제1항, 제2항(편집저작물의 취급) 언급	1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판례 언급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 구성 ->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	1	
		편집저작물 사안 포섭	1	
2	2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방법 관련 판례 언급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	1	8
		사안포섭 및 설문의 해결① : ‘이 사건 상세페이지’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가부(소극)	1	
		법 제4조 제6호(사진저작물) 언급	1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 언급 (촬영방법(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등),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경우 저작물 인정)	1	
		사진저작물 사안 포섭	1	
		법 제2조 제22호(복제), 제16조(복제권) 언급 - 각 0.5점	1	
		법 제2조 제10호(전송), 제18조(공중송신권) 언급 - 각 0.5점	1	
		설문의 해결② : ‘이 사건 사진’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가부(적극)	1	

1. 설문 1

설문 1은 편집저작물이 주 논점이었고, 대부분 잘 적어주셨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을 길게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설문의 문언과 출제의도상 이는 설문 2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답안을 쓰기 전에 설문 전체를 조망하신 후, 설문별 주 논점을 캐치하고, 설문 간 논점을 배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이 사건 상세페이지’와 ‘이 사건 사진’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전GS 수강생분들의 실력이 다들 높으셔서 이 함정에 빠지신 분들은 적었지만, 가끔 두 대상의 침해 여부를 뭉뚱그려 판단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5회차 GS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김선화/5월/실전GS/5회/3,4번	채점자
	유화정

1. 3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과, 링크 게시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침해의 방조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침해 방조죄를 구성하는 “링크”의 의미와 그 게시 행위 및 방조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미필적 고의로서의 고의와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계속적, 영구적인 링크행위 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주신 분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정확히 본 판례를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4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관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일신전속적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설문 1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아야하는지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자세히 기술하셨어야 했는데, 긍정례와 부정례를 모두 근거를 들어 작성하신 분들께 만점을 드렸습니다.

설문 2에서는 주 논점이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여부 였는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판단 요건을 작성하신 분들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작성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 내용을 쓰시느라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 관련 판례를 쓰지 못하신 분들께는 점수를 다 드리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주 논점을 파악하시고 나서 목차를 잡은 뒤에 답안을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 1]

I. 실문 (1)

1. 甲이 인용한 저작물 - "이사건 소설"

(1) 실질적 유사성 판단 (예시)

저작권 침해 판단에 "창작성권 관련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표저에 기재된 저작물 인용 (예시)

표저에 수록된 타인 저작물을 인용시, 그 "타인 저작물"의
창작성 관련 부분을 인용하였어 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사안

① 후문 표저에 수록된 "이사건 소설"의 주요한 부분은
인용한바, ② 표저 "이사건 소설"의 창작성 관련 부분을
인용하여, ③ "이사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2. "이사건 소설"의 저작자 - "乙"

(1) 저작자 의미 (조 2호, 10조 2항)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고, 저작물은 창작시에 발생한다.

(2) 저작자 판단기준 (예시)

"창작성 관련에 기여한 자" 저작자이다.

(3) 사안

특히 명용한 "이 사건 소실" 권리주변에 기여한가는 "2"이므로,
"2"이 지적사항이다.

3. 결론

① ~~본~~ 2의 "이 사건 소실"을 명용한 점과 ② ~~실질적~~ 사실성, 악성, 인정됨 ③ 지적하는 "2"인바, ④ ~~특수~~ ~~특~~ 2의 권의 침해하며 ⑤ ~~특~~ ~~특~~ "부당하다."

II. 실판 (2)

1. 특의 행위 법적 의미 - "복제", "베르"

(1) 복제 의미 (2조 22호)

원죄 등 방법으로 원작성·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복제~~ ~~복제~~ 또는 지체
 하는 것이다.

(2) 베르 의미 (2조 23호)

지적권 권리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예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양도~~ 양도 또는 대여 하는 것이다.

(3) 사안

① ~~본~~ "이 사건 소실"을 "이 사건 ~~소실~~서"에 수록하여
 인쇄하여 "복제 행위"를 했고,

② ~~본~~ "이 사건 ~~소실~~서"를 소실"이 수록된 "이 사건 ~~소실~~서"를
 사중판계용으로 출판하여 "베르 행위"를 한 것이다.

2. 특허 항변 1 타당 여부 - 소극(1) 공중지각물이 각주 인용 (24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다.

(2) 사안

㉠ "이 사권 소설"은 국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 아니고,

㉡ 또한 "이 사권 소설"에 대하여 같은 국가에 인용허락을 받았을 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 ~~특허 항변은~~ → 결론 행간 "24조2에 해당하지 않다"

㉣ 특허 항변은 "특허 부항하다."

3. 특허 항변 2 타당 여부 - 소극(1) 공표된 저작물 인용 (25조)

공표된 저작물은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 공표권행 함이 되기 인용할 수 있다.

(2) 정당한 범위 내 공표권행 함의 여부 판단방법 (원칙)

정당한 범위 내 공표권행 함의 여부는 ① 되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부종하는지" ② "인용저작물의 목적, 성격, 인용의 분량, 인용의 방식 및 인용권행동에 비하여 중요하여야 판단한다."

(3) 사안

- ① 甲의 "이 사건 소설"의 주요 컴퓨터 대부분을 인용한 점,
 ② 甲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 ③ 컴퓨터 대부분이
 인용되어 乙의 "이 사건 소설" 사항가치를 대체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④ 甲은 공정 사용 방식이내 공경권행
 행하지가 乙의 저작물 "인용한 것 아니다." 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부당하다."

F. 결론

- ① 甲의 행위 1, 2 모두 부당하다, ② 甲은 "복제. 배포"
 행위이며 ③ 乙의 "복제권 (16조) 배권 (20조)
 침해한다."

II. 실문 (3)

1. 공표의 (2조 25호)

공표한 저작물을 공연·공중전 등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발행의 (2조 24호)

발행은 저작물을 공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 배포" 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히 행위가 "발행"인지 여부 - 소극

(1) 취지

① 발행이란 저작물을 공표할 목적을 위하여 "복제·배급" 하는 것을 의미하고, ② 여기서 "·"은 "아니와"의 의미를 가지므로, ③ 단순히 복제 행위만을 한 것은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

무엇 "이 사건 신문"을 수록한 "이 사건 광고"를 "복제"만 했을 뿐, "복제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특히 행위는 "발행"이 아니다.

4. 특히 "이 사건 신문" 공표하였는지 여부 - 소극

(1) 취지

공표를 위한 저작물을 "발행"해야 하므로, 단순히 "복제"한 것이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위가 "공표가 될 수 없다."

(2) 사안

특히 행위가 "발행에 해당하지", 이는 "외사건 신문"의 "공표행위가 아니다."

5. 결론

특히 행위는 "이 사건 신문"의 "공표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결]

19

2기

작성과 맞췄다!



[문제 2] 13

I. 선문(1)

1. 논리정리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권으로 인정되어 독립하여 저작권성이 인정되는지 묻는다.

2. 편집 저작권의 의미

(1) 편집권 의의 (저작권법 제17조)

편집권은 저작물이나 자료, 분과 그 밖의 형태에 자료의 집합물을 빚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편집저작권 의의 (저작권법 제18조)

편집저작권은 편집물과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편집저작권 판단기준 (취체예)

취체예는 편집저작권의 저작권성 판단은 그 소재의 창작성이 아닌 각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을 통해 있어서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의 있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4. 편집저작권의 보호 (저작권법 제18조)

편집저작권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5. 선문의 체결

(1) 저작권성 판단

모든 사진과 내용구성은 3개조 4개조, 사진의 배열

계좌, 동경, 제당업, 원부규정 등에 관한 여러
감부들을 선택한 내용의 방식으로 배열하여 상에
태어러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복사한 것이므로, 즉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2) 소관

원래 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제6조 제1항
에 의해 사건과 별도로 저작물과 보호 받을 수 없다.

포 상권 (2) perfect!

1. 침해도전 검토

- ① 무조건 저작물은 ② 이윤채는 캠티를 되어야 되고
- ③ 저작도전으로 저작물로서 의지성 ④ 저작권도전으로
사권의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⑤ 저작도전으로
경쟁권은 필 저작권자가 없어야 한다.

2. 이 사건 상세 태이리에 관한 침해 여부 (등)

나. 사권의 유사성 판단대상 (위법)

위법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사권의 유사성은
태상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필성이 있는 부분, 즉 창작적인
표현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침해
대상에 되는 저작물과 창작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상세페이지의 저작권은 그 상세 설명
페이지 - 기사에 실린 것임, 상세에 불리한 사권만을
캡처한 것의 성격 유색성이 인정됨과 불수업이
~~침해가 없다.~~

3. 이 사건 사권에 관한 침해 여부 (참조)

1) 이 사건 사권의 저작권성 판단 (적용)

1) 사권적작품 여부 (근거 43, 44항, 46항)

사권의 형태로 인간의 사색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뜻한다.

2) 사권 저작물 창작성 판단 기준 (위례)

위례는 사권저작물의 창작성은 피사체의 선정
조, 빛의 양, 빛의 조도, 현상 및 인화 과정은
표명적으로 드러내어 창작적 표현이 드러나도록
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모리스 동원사 대표 동남
god!**

무은 모델을 제작하고, 약세서리·선물, 풀개봉
등을 제작한 다음 다양한 구조에서 외형을 취해
해에 그 형태감과 창작성의 드러나도록 사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4) 1의 이유행위 검토

1) 캡처행위 - 복제 (근거 42항, 44항)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공 또는 행이 일사적으로 기공
하는 행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2) SAS 업로드 - 전노행위 (기공 23 제10호)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일반 공중의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된 것인 바 전노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주장문서의 양립하는 사항은 그대로 복제-전노행
위로서 복제권 (기공 163), 공중전노권 (기공 182)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문]

[문제 3] 19

1. 식문 1)

1. 시각물상 표현 방식 법리.

1) 시각물 위와 (식제 2조 제 1호)

시각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상한다.

2) 창작성 판단방법 (위례)

위례는 창작성을 시각물이 인간적 통찰력을 지녔을
때로 제1항 단서 내의 조항에 비견·비유한 것은
아니나 라고 창작적 통찰력 표현이 드러나지 않을
때다.

2. 프로그램 표현의 창작성 인정 여부 검토

1)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때는 창작적 표현이므로
이와 보호의 대상에 아니다.

2) 창작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위례)

위례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개별 요소를 시각적
요소로 처리하고, 통찰력을 지녔으며 그 요소를
선적, 미적 구성함에 따라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는 경우 시각물성이 인정된다.
고 있다.

3) 사안의 경우

1) 아이디어에 불과한 단순시퀀스 시각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 ② 이 사건 프로그램 코드는 대외에 없이 진행되는 특정한 형식으로 위치를 주어 개발자에 따라 다르게 여정을 처음 개발에 기술의 예능과 구별되는 특정 일이다. 그 코드가 완성된 변경되므로 ③가장지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지법 인용

15

표. 식별(2)

1. 원재질 검토.

- ① 유용한 지식을 ② 이동하는 행위로서
- ③ 주관적으로 위계적목적의 의사가 있어야 함
- ④ 객관적으로 식별가능한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며 ⑤ 그 외 감당가능이나, 개량사유 등이 있어야 함

2. C의 원재질 여부 검토. (각각)

가장지법 인용

1) C 이동행위 검토.

1) 이 사건 프로그램 복사 행위 - 복제 (C가 제2조 제2호)

C는 자신의 컴퓨터 및 서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복제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 사이트 게시 - 간접 (C가 제2조 제1호)

공중의 우연히든 개별적으로 선택한 사람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의 용역은 사이트에 올린 것이라 간접행위에 해당한다.

2. 이 기성 및 원리의 우선성 검토

이 이 사건 사이트에 올린 기사본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며 그 이기성과 원리의 우선성이 인정된다.

10.5

3. 이 기성

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자신의 운영체제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복제권 (조 16조), 공표권 (조 18조) 침해에 해당한다.

god!

3. 서의 침해여부 검토 (조)

(1) 링크 여부

링크란 인터넷 상에 주소록 동기시켜 그 안에 비공개로 차기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연결정보를 말한다.

(2) 링크의 종류

① 권위링크는 그 주소를 통해 저작물이 있는 웹 사이트의 도메인명에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간접링크는 그 주소를 통해 저작물이 있는 그 페이지의 링크를 말한다.

③ 상호링크는 주소록(통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말한다.

④ 임베디드 링크는 링크 기록자의 화면에 저작물이 표시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한다.

10.5
god



이게 복제!

(3) 링크 개로 행위가 복제-전송의 여부 (취제)

취제는 링크는 그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를 개로 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저작재산상 복제행위라거나 전송행위에 해당하여 안한다 한다.

(4) 사안의 경우

① 새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고 있는 나 링크 행위를 하고 있다.

②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상 저작물을 복제한다거나 전송하는 등의 이용행위(나 예) 때문에 그 설만으로 저작재산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표. 4. 3)

1. 저작재산상 남용행위 범위 검토

(1) 남용행위 범위 (취제)

취제는 저작재산상 남용행위란 저작권 침해를 위하여 하는 모든 직·간접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2) 남용행위 인정사기 (취제)

취제는 남용행위 성립에 있어 사기에 대한 대응행위는 그 이용행위 전에 침해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는 소액결제란 개념 링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에 예외가 되려면 > 링크를 업로드하여 기록
이 영리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4) 소결

또는 영리적으로 계속하여 링크를 기록해 달래를
동일하게 하고 있으므로 링크행위에 대한 소액에 해당
한다.

Good!
[권]
영리성 있다!!

↓ 계속 기록한다!!

비영리!

< 문제 4 > 115

I 문제 (1)

1 특허법 224

① Z의 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출원 후 특허권 취득을 할 수 있는
일이 속한 후 ② A 발명의 발명권은 소멸한다

105

2 이 사건 발명권의 출원 후 발명권자의 의무

(1) 출원 후 발명권의 유지·보존 의무

① "출원 후 발명권"은 발명권자가 발명권 취득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간에 (제 53조/제 54조)

② "출원 후 발명권"의 유지 의무는 (1) 이 사건 발명권 취득 후
(2) 출원 후 발명권 유지 (3) 출원 후 발명권 유지
이 아닌 다른 발명권 유지·보존 의무는 이 사건 발명권
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안별 경우

Z는 (1) 이 사건 발명권을 기점으로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 발명권
유지권을 유지할 때 (2) Z의 발명은 이 사건 발명권 취득
후의 발명권으로 표적한 '이전 발명·유지권' 등의 발명
발명권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 사건 발명권은 출원
직접권에 해당한다.

3 A 발명의 발명권 권도 - 발명권자의 권리

(1) 음향적 유사성 여부 (제 133 조)

상표와 그 유사물의 사용-행위 내용의 음향성을 비교
판단 한다.

(2) 음향적 유사성 여부 (제 134 조)

" ① 유사물의 사용의 개시 이후 음향성을 비교
② 사용 개시 후 유사물의 음향성을 비교
판단 한다 "

(3) 상표 사용의 유사성의 여부

1) 음향

① 음향적 유사성을 판정할 때 음향적 유사성의 정도
상하 정도를 고려한다
② 음향적 유사성을 판정할 때 음향적 유사성의 정도
음향적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다

2) 시각

음향적 유사성과 유사성이 혼동하여 악영향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3) 기타

상표 유사성을 판정할 때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판정. 음향적 유사성의 여부

(4) 상표의 사용

상표 사용 행위의 결과 상표 유사성을 판정할 때
음향적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다

0.5

0.5

